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김재범 소유물건(2026타경100007)

의 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세경

감정평가서번호: HD2601-20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D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박 해 득

감정평가액	일십이억육천오백만원정(₩1,265,000,000.-)			
의 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세경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8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재범 (2026타경100007)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1.14	2026.01.14 ~ 2026.01.16	2026.01.2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 1세대x-2 이	구분건물	1 1세대x-2 여	- 백	1,265,000,000
	합 계					₩1,26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소재 '세종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수서한아름아파트 제102동 제12층 제1206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2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22]			
건물명 · 동	수서한아름아파트 제102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사용승인 일 자	1993.11.01
대지면적 (㎡)	27,072	연면적 (㎡)	14,801.64
주 용 도	아파트	규 모	지상 15층/ 지하 1층

3. 평가대상 구분건물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기준]

기호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 (㎡)	대지권 (㎡)	용도	
	동	호수					공부	현황
1	제102동	제12층 제1206호	129.45	23.16	152.61	57.45	아파트	아파트

HD감정평가사사무소
HD CERTIFIED APPRAISAL OFFIC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01월 14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은 **2026년 01월 14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번, 호수는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으며, 물적 동일성은 인정됩니다.
- 본건은 전체면적중 김재범 지분(1/2)만의 감정평가입니다.
-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은 외부관찰 및 도면, 전례 등에 의해 작성 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상이할 수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를 일괄로 감정평가 함에 있어,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근 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바, 본건과 유사한 평가사례, 매매사례 등을 통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사항의 확정	● 대상 부동산의 확정 ● 기준시점의 확정 ● 기준가치의 확정
⇩	
처리계획의 수립	● 사전 조사계획의 수립 ● 실지 조사계획의 수립 ● 가격 조사계획의 수립 ● 감정평가서 작성계획의 수립
⇩	
대상물건의 확인	● 물적사항 확인 ● 권리상태의 확인 ● 물적불일치 여부의 판단
⇩	
자료수집 및 정리	● 확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요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사례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 일반적 요인의 분석 ● 지역적 요인의 분석 ● 개별적 요인의 분석
⇩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및 시산가액 조정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 /호수	전유면적 (㎡)	실거래가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수서동 71*	수서한아름 아파트 제105동	제10층 제10**호	129.45	2,500,000,000	19,312,476	2025.06.24
							1993.11.01
#2	수서동 71*	수서한아름 아파트 제102동	제11층 제11**호	129.45	2,450,000,000	18,926,226	2025.06.18
							1993.11.01
#3	수서동 71*	수서한아름 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호	129.45	2,245,000,000	17,342,603	2025.02.22
							1993.11.01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으며, 기타 거래조건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 인근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 /호수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평가 목적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a	수서동 71*	수서한아름 아파트 제103동	제8층 제80*호	97.63	1,900,000,000	19,461,231	조세	2025.03.26
								1993.11.01
b	수서동 71*	수서한아름 아파트 제105동	제3층 제30*호	97.63	1,650,000,000	16,900,543 (평균)	시가 참고	2025.02.10
								1993.11.01
c 본건	수서동 71*	수서한아름 아파트 제102동	제12층 제12**호	129.45	2,400,000,000	18,539,977	시가 참고	2025.12.15
								1993.11.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	가격수준(원/㎡)	비고
본건 인근	아파트	-	전유면적(㎡) 당 17,000,000 ~ 20,000,000	층, 위치에 따라 가격차이 존재함.

4.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통계 분석

(출처: http://www.courtauction.go.kr)

구 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 고
	매각율(%)	매각가율(%)	
아파트	45.1	97.8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 1년 평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비교사례의 선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참고자료 중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인 다음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본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1

나. 선정된 비교사례

기호	소재지 지번	건물명 /동	층 /호수	전유면적 (㎡)	실거래가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수서동 71*	수서한아름 아파트 제105동	제10층 제10**호	129.45	2,500,000,000	19,312,476	2025.06.24 1993.11.01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결 정 의 견	본 건 인근 및 유사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시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 합니다.
사정 보정치	1.00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비교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건 구분건물(아파트)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월간동향 중 해당물건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월별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가. 매매가격지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처 : 한국부동산원, 단위 : %, 2025.03 = 100.0기준]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5	96.6	97.4	100.0	100.7	101.8	104.7	106.4	107.0	107.8	108.8	109.7	110.8

나. 시점수정치

	시점		매매가격 적용지수	
			시점	지수
한국부동산원 R-ONE부동산통계시스템	거래시점	2025.06.24	2025년 05월	101.8
	기준시점	2026.01.14	2025년 12월	110.8
시점 수정치	110.8 / 101.8 ≒ 1.08841			

- 거래시점이 2025.06.24.로 2025년 05월 지수를 적용합니다.
- 기준시점이 2026.01.07.로 2025년 12월 지수를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주거용)

요인구분	비교항목	세부항목
단지 외부요인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인근 편익시설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 및 도보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차량 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계통, 접면)
		획지 · 단지의 여건(경사지, 고저)
	교육환경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등하교의 편리성
		인근 교육시설의 종류, 학군 선호도
	자연환경	자연환경(조망, 경관, 풍치 등),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접근성
	거주환경	거주환경 조성상태
		거주환경 저해시설(오염시설, 공해 및 소음유발시설, 위험 및 혐오시설 등)의 유무 및 거리
단지 내부요인	시공사의 브랜드	
	건물의 규모	총 세대수, 건물의 최고 층수
	단지의 구성 및 환경	동의 배치상태, 동간 거리, 면적별 구성비, 공간적 쾌적성(용적률, 건폐율 등)
		조경 및 녹지 등 조성상태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구조 및 재질
		현관구조(계단식, 복도식), 외부구조(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등), 내진설계, 필로티 유무
		난방방식(지역난방, 개별난방 등), 각종 설비(승강기 등)의 유무 및 상태
	건물의 노후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여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요인구분	비교항목	세부항목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의 상태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 주차장의 유무 및 세대 연결성,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기계식 주차장의 유무 및 비율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경로당, 유치원)의 유무 및 상태
	보안 및 유지관리	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및 관리상태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일조, 채광, 조망 등의 정도, 통풍의 정도
		엘리베이터, 계단으로의 접근성
		소음의 영향 정도
		사생활 침해의 정도
		공용시설 · 교육시설 · 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 편익시설의 접근성
	향별 효용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설계 및 구조	평면방식(타입 등), 방 및 화장실의 개수, 복층 유무, 1층 전용정원 여부, 다락 · 테라스 · 베란다 등의 유무
		반지하의 상태(전면 완전 노출형 등)
기타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재개발 · 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편입 여부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주거용)

요인구분	비교항목	평점	분석
(단지) 외부요인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1.00	본건은 사례#1과 비교하여 대등합니다.
	교통 및 도보의 편의성		
	교육환경		
	자연환경		
	거주환경		
(단지) 내부요인	시공사의 브랜드	1.00	본건은 사례#1과 비교하여 대등합니다.
	건물의 규모		
	단지의 구성 및 환경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노후도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의 상태		
	보안 및 유지관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요인구분	비교항목	평점	분석
호별 요인	층별 효용	0.93	본건은 사례#1과 비교하여 동간 이격거리 등 동별 효용,호별효용 등에서 열세합니다.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향별 효용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내부 설계 및 구조		
기타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1.00	본건은 사례#1과 비교하여 대등합니다.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		0.93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가액

비준가액 = 사례단가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치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19,312,476	1.00	1.08841	0.930	19,548,500	19,548,500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전유면적 (㎡)	지분	산출단가 (원/㎡)	산정가액 (원)	결정가액 (원)	비고
1	129.45	1/2	19,548,500	1,265,276,663	1,265,000,000	김재범 지분 (1/2)
합 계	129.45				1,265,000,000	

※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Ⅴ.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인근의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지분비율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세대수	지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구분건물	1세대	1/2	1,265,000,000	김재범 지분(1/2)
감정평가액			**1,265,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한아름 아파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22	712 수서 제102동	아파트	철근코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1층	957.24			
				2층	928.56			
				3층	928.56			
				4층	928.56			
				5층	928.56			
				6층	920.16			
				7층	920.16			
				8층	920.16			
				9층	920.16			
				10층	920.16			
				11층	920.16			
				12층	920.16			
				13층	920.16			
				14층	920.16			
				15층	920.16			
				지하층	928.56			
	동소	712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27,123.3			
1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2층 제1206호	1 129.45 x-2	64.73	1,265,000,000	김재범 지분 (1/2)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소유권 ------- 대지권	57.45 ------- 27,123.3	28.73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948,750,000**	
						건 물 :	**316,250,000**	
	합 계						**₩1,265,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소재 '세종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수서한아름아파트 제102동 제12층 제1206호)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가 주를 이루며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부분적으로 혼재하는
주택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수서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내 12층 1206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내장타일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외곽으로 공도와 접하고 있으며, 단지내 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수서택지개발지구),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공동주택용지),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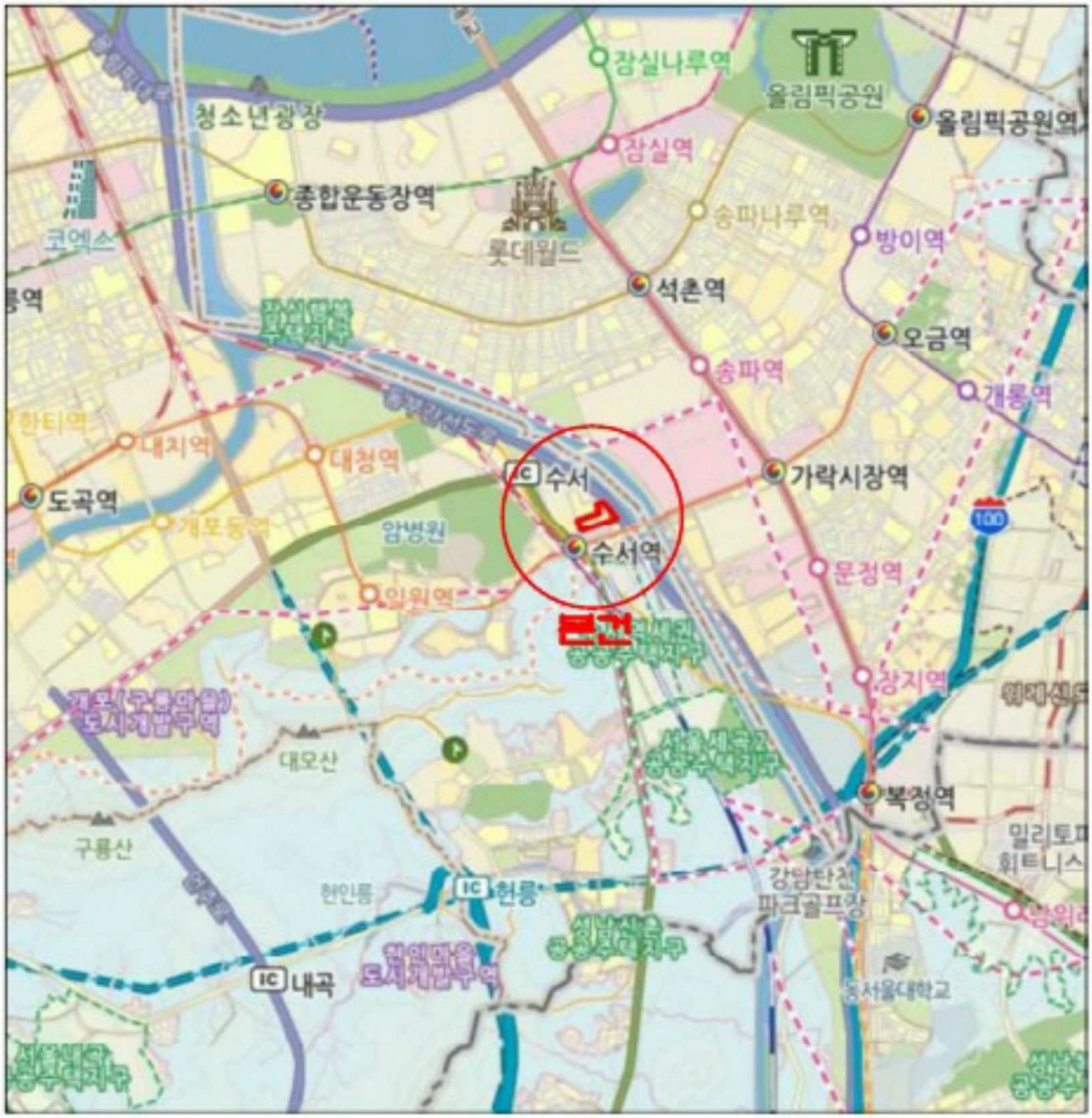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전체중 김재범 지분(1/2)만의 평가입니다.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2 수서한아름아파트 102동 12층 12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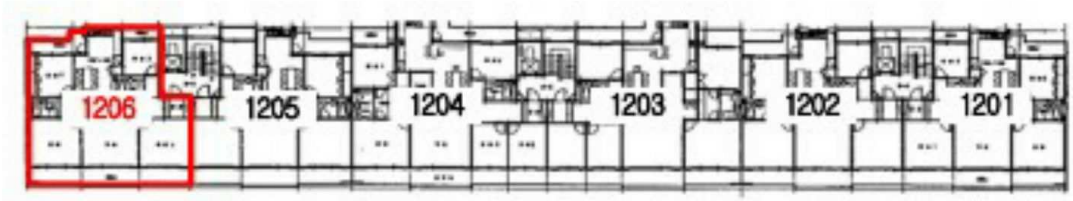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12 수서한아름아파트 102동 12층 1206호



건 물 호 별 배 치 및 내 부 구 조 도

호 별 배 치 도



내 부 구 조 도





#1



#2



#1



#2





(1206)